ULSAN
THE RISING CITY

2020. 12.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 2020년 남부소방서 -

종 합 감 사 결 과 공 개

감사결과의 공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소 방 행 정 과)

2020년 남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 기　　간 : 2020. 11. 16.(월) ~ 11. 27.(금) (10일간)

※ 사전조사 : 11. 9. ~ 11. 13.(5일간)

○ 감 사 반 : 소방행정과장 등 8명

○ 범　　위 : 2018. 5. 1. ~ 2020. 8. 31.까지 처리한 업무

○ 방　　법 : 서면(시스템) 및 현장 실지감사

Ⅱ 감사 결과

○ **지적건수** : 56건(시정 21, 주의 31, 개선 2, 권고 2)　*현지조치 포함

- 신분상 : 14건 / 44명(경고 7, 주의 37)

- 재정상 : 7건 / 7,532천원(회수 4건/682천원, 추징 3건/6,850천원)

구 분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수	추급	추징	계	징계	경고	주의
계	56	21	31	2	2	7,532	682	-	6,850	44	-	7	37
본 처분	51	16	31	2	2	7,130	280	-	6,850	44	-	7	37
현지조치	5	5	-	-	-	402	402	-	-	-	-	-	-

※ 입건 1건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300만원이하 벌금)

Ⅲ 처분요구 사항

1. 처분요구 목록(본 처분)

*현지처분 별도

일련번호	건 명	처분건수(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수	추급	추징	계	징계	경고	주의
계	지적건수 : 51건	51	16	31	2	2	7,130	280	0	6,850	44	0	7	37
1	자녀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1	1				191	191						
2	비위공무원 징계사유 조사 소홀	1		1										
3	화재조사요원 유자격자 배치 소홀	1				1								
4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부여 소홀	1	1								1			1
5	비밀문서 관리 소홀	1		1										
6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1		1										
7	필수 보직기간(전보제한 기간) 미준수	1		1										
8	공인의 인영 인쇄 협의 및 관리 소홀	1	1											
9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1	1				2,250			2,250				
10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1		1										
11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1		1							1			1
12	구급소모품 구매방법 부적정	1		1										
1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1		1										
14	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1	1				69	69						
15	수의계약 배제자와의 계약 체결	1	1								1			1
1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완납) 확인 소홀	1		1										

일련번호	건 명	처분건수(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수	추급	추징	계	징계	경고	주의
17	불필요한 서류 징구	1		1										
18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	1	1				2,600			2,600				
19	화재증명원 발급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1		1							6			6
20	외부강의 신고 관리 부적정	1	1				20	20			1			1
2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업무 처리 소홀	1	1								1			1
2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부적정	1			1									
23	민원처리기한 경과	1		1							2			2
24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사항 확인 소홀	1		1							12			12
25	용접·용단 작업장 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1			1									
26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 소홀	1	1											
27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1		1							1			1
28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 서류검토 소홀	1		1							3			3
29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1		1										
30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1		1							5			5
31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1		1							1		1	
32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등 변경신고 태만	1	1				2,000			2,000				
33	위험물제조소등 기술기준 부적합	1	1											
34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	1	1											
35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지연 실시	1		1										

일련번호	건 명	처분건수(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수	추급	추징	계	징계	경고	주의
36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수당지급 부적정	1				1								
37	호흡보호장비 관리 소홀	1	1											
38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미준수	1		1							3			3
39	구급차 운용 부적정	1		1										
40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점검 부적정	1	1											
41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1	1								6		6	
42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 부적정	1		1										
43	구급 이송거절 및 거부 확인서 미작성	1		1										
44	이송의료기관 선정관련 구급활동일지 작성 소홀	1		1										
45	구급활동일지 활동상황(활력징후) 기록유지 소홀	1		1										
46	감염성 질병 등 접촉 보고 및 접촉대원 추적관리 미이행	1		1										
47	신규임용 구급대원 교육 미실시	1		1										
48	구급차 등 정기 소독 및 감염관리실 관리 소홀	1		1										
49	구급의약품 관리 부적정	1		1										
50	펌블런스대원 교육 소홀	1		1										
51	구급대원 교육훈련기록표 관리 부적정	1		1										

2.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자녀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금191,183원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준용)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3. 적용범위 및 대상에 따르면 이 예규는 소방관서에서 외근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방공무원 중 근무시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내근근무)하는 자의 휴가 실시 및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조례 또는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제8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3항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및 가족돌봄휴가(유급3일+무급7일)로 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9장(휴가) 라. 특별휴가 (10) 자녀돌봄휴가에 따르면 "사용범위(예: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와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병원진료 확인서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2020년부터는 3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할 때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 소방장 ○○○과 소방위 △△△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므로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자녀돌봄휴가 3일을 사용하여 각각 1일을 초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연가보상비 191,183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자녀돌봄휴가 사용일수를 준수하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연가대신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191,183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시정)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비위공무원 징계사유 조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부칙〈제85호, 2019. 6. 25.〉에 따르면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포함된 음주운전 횟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함에도, 2020년 음주측정거부과 음주운전으로 통보된 2건의 비위공무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혐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가 몇 회인지를 알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비위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시 필요한 조사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화재조사요원 유자격자 배치 소홀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3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6조(조사전담부서 설치 등) 2항에 따르면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위험물·전기·안전관리(가스·소방·소방설비·전기안전·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기본계획 세부지표에도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 자격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화재조사의 원인감식과 피해조사의 전문화와 업무 발전을 위하여 화재조사분야 자격자[화재조사관,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

1)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소방위이하 소속 직원 중 화재조사 자격자가 15명이 있음에도 화재조사요원 6명 중 자격자 2명만을 배치하였고, 3개팀 중 1개팀에는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화재조사 유자격자 배치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화재조사분야 자격자가 우선 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부여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1명

【지 적 내 용】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8조 4항[2]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5항에 따라 4항 제2호·제3호·제5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의사진단(소견)나 사유서를 체력검정성적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파견·교육,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임신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관은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 연도 체력평가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평가 점수는 임용권자별 해당연도 계급별 평균점수로 하며,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이상

2)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 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2.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포함), 임신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관
3.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4.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5.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소방공무원,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평가 점수는 45(평정점 3.2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체력검정 미실시자에 대한 평정점을 부여하면서 2018년 소방사 ○○○, 소방장 △△△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관서장이 인정하는 자(육아휴직)로 최근 1년6개월 이내 평정점인 4.99점과 5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각각 3.75점으로,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장 ○○○, 소방장 □□□는 육아휴직으로 최근 1년 6개월 이내 평정점이 없어 평정점을 3.2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2.5점으로 평정하였으며

2019년 소방사 ◆◆◆는 육아휴직 중으로 최근 1년6개월 이내 평정점이 없어 3.2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3.71점을 부여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평정점을 부여하여 개인별 체력검정성적 평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관련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시정)

○ 관련자 남부소방서 소방장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119재난대응과)

【제 목】 비밀문서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1항에 따라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0조(파기) 2항에 따라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비밀의 파기)에 따라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된 비밀열람기록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3(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에 따르면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4항에 따르면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 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비밀문서 파기에 관한 사항

○ 비밀문서 및 대외비 사본을 파기하는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확인란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대외비 7건(관리번호109, 110, 111, 113, 114, 115, 116)에 대해서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 확인자는 날인하지 않고 처리담당자만 날인하였고,

비밀문서를 파기 한 경우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비밀등급'부터 '예고문', '형태'부터 '예고문'까지 잘못 삭제처리 하였음.

○ 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Ⅲ급 비밀문서 3건(관리번호 83, 86, 89)에 대해서 비밀관리관리부에 파기 확인자 및 처리담당자의 파기확인 날인을 하지 않았음.

○ 또한 소방행정과, 119재난대응과에서는 붙임 "보호기간 만료된 비밀문서 현황"과 같이 파기해야 할 사본 비밀문서(Ⅲ급) 14건(소방행정과 14건), 대외비 11건(소방행정과 6건, 119재난대응과 5건)을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확인 날인을 하고도 실제 파기하지 않고 부서 내에 따로 보관하고 있고,

119재난대응과에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원본 6건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음.

나. 비밀열람 기록전에 관한 사항

○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14건의 비밀문서를 관리하면서 비밀문서를 접수하거나 보안담당자 및 책임자가 교체되어 비밀문서를 인계·인수시에는 비밀열람 기록전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에도 비밀문서 12건(관리번호 137, 138, 149, 150,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61)에 대하여 기재 및 서명하지 않았고,

소방행정과, 119재난대응과에서는 비밀사본을 파기한 경우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고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보관하지 않은 등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비밀열람기록전 기재, 보관 및 비밀문서 파기 등 비밀문서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준용)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3. 적용범위 및 대상에 따르면 이 예규는 소방관서에서 외근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방공무원 중 근무시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내근근무)하는 자의 휴가 실시 및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조례 또는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병가 사유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병가 사용 예시**(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또한, 병가 기간은 승인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연가사실 미기록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구체적인 질병·부상명을 기재하지 않고 병원진료, 병가, 병원입원 등과 같은 사유로 신청한 병가를 승인처리 하였다.

나. 장기재직휴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지침(총무과-9268, 2018. 5. 17.호)에 따르면 부서별 휴가실시 결과를 제출받아 개인별 장기재직 특별휴가 실시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 - 인사기록 - 장기재직휴가 관리 항목이 생성되어 인사기록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장기재직 특별휴가 실시사항 19건 중 6건을 기록 관리(입력)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병가 사유 및 진단서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실시사항을 즉시 입력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필수 보직기간(전보제한 기간) 미준수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6. 4. 5.부터 필수 보직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되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 호[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18년~2020년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총 2명에 대하여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사발령을 하였다.

---

3)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경우
9.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도 지역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신 중인 소방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필수 보직기간 등 인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0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제 목】 공인의 인영 인쇄 협의 및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제13조(인영의 인쇄 또는 사전날인 사용)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영인쇄 목적, 관계법령, 수량 및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도록 하여 사고와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2017년에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 공인 인영이 포함된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10,000부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고, 2020년에는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통지서' 15,000부를 인쇄하여 사용하면서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기록유지 하지 않았고

○ 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 공인 인영이 포함된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198매를 제작하면서 소방행정과에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인인쇄 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기록유지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공인인쇄 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용내역을 기록유지 하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및 결재를 득한 후 인쇄하시기 바라며,(시정)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금2,25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6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및 [별표 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르면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사도급,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고,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매입필증의 징구)에 따라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은 그 계약자에게 매입필증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18. 5. ~ 2020. 8. 까지 체결한 계약 중 10건 1,920,000원의 공채매입 필증을 징구하지 않았고, 14건은 985,000원의 공채매입 필증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655,000원의 공채매입 필증만 징구하여 330,000원의 공채매입 필증을 과소 징구한 채로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미징구 10건, 과소징구 14건)을 조속히 징구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시설 공사 하자검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법 시행령」제7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 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2018년 소방용수시설 신설 공사” 등 12건의 공사계약에 있어 정기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 체결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1명

【지 적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수난 및 산악안전시설물 제작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공사내용에 적합한 건설업자(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관련자 소방경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구급소모품 구매방법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일정 기간 계속 하여 제조, 구매, 수리, 가공, 매매, 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구급장비 소모품 구입 현황”과 같이 2018년 ~ 2020년까지 구급장비소모품 구입 건에 대하여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18년 6건 2,378,650원, 2019년 4건 3,109,240원, 2020년 3건 1,278,000원을 정당집행 예산과목이 아닌 과목에서 집행하는 등 총 13건 6,765,890원을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과목에서 매년 물품을 구입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 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2018년 9건 14,802,090원, 2019년 10건 7,910,280원, 2020년 1건 990,000원 등 총 20건 23,702,370원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금69,138원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과 공사 시행 후 소요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증빙서류 포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실적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정당한 비용을 정산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환경보전비로 계상한 내역의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정산 없이 “청사노후창호 및 외벽 대리석 교체 공사의 환경보전비” 40,046원, “2018년 5차 소방용수시설 보수공사의 환경보전비” 29,092원을 지급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부당하게 지급한 환경보전비 69,138원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수의계약 배제자와의 계약 체결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1명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남부소방서에서는 해당업자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2020. 4. 20. 우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행정지원과-794(2020. 1. 23.)"호에 따라 해당업자는 2020. 1. 22. ~ 2020. 4. 21.(3개월) 기간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 배제업자인 "◈◈◈기획"과 계약을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기획"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바라며,(시정)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소방본부 소방위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소방행정과)

【제 목】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완납) 확인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3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계약대금 지출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대금으로 계약자의 체납보험료를 대납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체납 미확인에 대한 사항**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계약발주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납부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자로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함에도 38건의 계약 건에 대해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 **납부증명서 유효기간 도과에 대한 사항**

-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는 별도 유효기간이 표시된 것 이외에는 발급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매월 10일)까지 증명 효력을 가지는데 기간이 도과된 21건의 증명서에 대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 위와 같이 남부소방서에서는 59건의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완납)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도과된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불필요한 서류 징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접수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조치명령 연기신청)을 민원인에게 발부하고 있으며,

○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와 관련,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고,

○ 또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민원인이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4]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4) 제19조(구조·구급증명서)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의 의무를 명시**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9건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문서대장에 등록하였으며,

○ 119안전센터에서 2018. 5. 1. ~ 2020. 8. 31.까지 처리한 화재증명원, 구조·구급 증명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문으로 첨부하여 문서대장에 등록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태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과태료) 금2,60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의 2항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 12조 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울산 남구 달동 ◎◎◎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 책임소방기술자 ◆◆◆가 2020. 1. 31. 퇴사하여 변경신고 기한인 2020. 3. 2.까지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지연된 2020. 3. 3.에 소방시설착공변경신고를 제출하였고,

○ 또한 2020. 2. 1. ~ 2020. 2. 5.까지 5일간 울산 남구 달동 ◎◎◎ 근린생활시설 소방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 배치사항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 2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고,(시정)

○ 소방착공변경신고(기술자 변경) 업무 처리시 제출서류(소방시설업 등록수첩)는 물론 기술자·감리원 배치시스템도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화재증명원 발급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6명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제1항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 상황 점검에서도 화재증명원, 구조구급 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접수 후 원본을 스캔 첨부하여 비전자 접수문서로 등록하고,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를 등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18년 화재증명원 신청서류 27건을 접수한 후 비전자문서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비전자 접수 문서를 분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향후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비전자문서를 처리과 문서대장에 접수 처리하고, 스캔 문서는 원칙적으로 사본이므로 비전자문서 원본을 규정에 따라 보관 후 기록물부서로 이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비전자 문서를 규정에 따라 접수·보관하지 않고 분실한 관련자 6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외부강의 신고 관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금20,000원

【신분상 조치】 주의 1명

【지 적 내 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21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리고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출장 조치가 가능하며, 대가를 지급받는 외부강의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소방경 ○○○는 2018년 5월 ◇◇◇◇◇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방장 ◈◈◈은 2020년 8월 울산남구 ○○○○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서 출장비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전체 170건의 외부강의 신고 건 중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신고는 3건, 행동강령책임관(소방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신고는 29건,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신고는 138건으로 외부강의 신고 방법 또한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외부강의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없이 외부강의를 진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출장여비를 중복 지급 받은 소방장 ◈◈◈에 대하여 출장비 금20,000원을 회수하시고,(시정)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방경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승인 방법 개선 및 외부강의 대상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업무 처리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1명

【지 적 내 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 처리지침(소방청, 2016. 5. 2.)」 에 따르면, 건축물의 폐쇄, 단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건축물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장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고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는 2020. 5. 22. 선임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선임유예 연장 신청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남부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예 연장 신청을 받거나,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50조 제5호에 따른 벌칙을 처분하시고,(시정)

○ 선임신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소방교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과 7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 관계인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를 감독하는 관계자의 책임과 업무 대행자와의 계약사항 등이 명시된 선임증을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으로 발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소방청에서 설치한 전산시스템(소민터)을 이용한 관계자에게도 선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게 총 1,245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면서 이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664건의 선임증을 불필요하게 발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6항과 7항에 규정된 대상에 선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민원처리기한 경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2명

【지 적 내 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처리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민원의 신청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법정민원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향후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법정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 민원 처리 기한 준수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사항 확인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12명

【지 적 내 용】

○ 남부소방서에서는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매년 관계자에 의하여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에서는 소방관서에서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있는 ◇◇◇◇ 등

24개소에 대하여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을 초과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자체점검 조치명령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관련자 12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용접·용단 작업장 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 등 6개 공사장에 소방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소방기본법」 제15조 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1인 사업자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놓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최초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의 사업자는 용접·용단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에게는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벌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용접 작업장 화재발생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관할 노동청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용접·용단작업장 화재발생시 사업자(사업장)에 대한 고용관계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관내 소방훈련, 재난현장지휘, 화재조사,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남부소방서에서는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을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의 현황을 파악, 정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 262개소 공공기관 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공공기관 141개소, 자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120개소로 추진율이 부진하며,
합동소방훈련 제외 대상처의 근무 인원 증감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 주민센터가 합동소방훈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관내 공공기관이 합동소방훈련 대상에 제외되어 훈련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대상은 비대면 훈련 등의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예방안전과)

【제 목】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1명

【지 적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에 따라서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험물 옥외저장소의 지정수량 배수를 증가(고인화점 위험물 제4류 196배 → 368배)하고자 하면 기존 허가 당시의 보유공지 6m가 아닌 10m를 확보하여 ‘품명 등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서 품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험물 옥외저장소 ‘품명 등 변경신고’ 서류를 민원 접수한 경우 검토 단계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고서류를 반려하고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품명 등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하여 신고 수리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등 변경신고 업무를 소홀이 한 관련자 소방장 ◈◈◈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제 목】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 서류 검토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3명

【지 적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2항에 따라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3호에 따라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 따라서 품명 등 변경신고서 접수 시에는 변경예정일 1일 전까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품명 등 변경신고서의 변경예정일이 미기재된 서류를 접수하여 신고 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신고서에 변경예정연월일이 미기재된 위험물제조소등 168개소에 대해서는 변경일자를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을 시 의법 조치바라며,

○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등 변경신고 서류 검토를 소홀이 한 관련자 3명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제1항에 따라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유소에서 2018년 10월 12일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분할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여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을 시 의법 조치 바라며,

○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장생포119안전센터, 공단119안전센터)

【제 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5명

【지 적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15조 제8항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1인의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할 수 없는 3천배 이상의 이송취급소를 포함하거나, 5개소를 초과한 제조소등에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포함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접수하여 신고 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8항을 위반하여 중복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적법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소홀이 한 관련자 5명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경고 1명

【지 적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제1항에 따라서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주유소의 설치자 ◇◇◇은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1차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8년 6월 12일 2차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그 공사를 마친 후 2018년 8월 23일 완공검사를 신청하였다.

○ 2018년 8월 23일 완공검사 신청 시 변경허가 도면 상에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주입구 위치 이전과 고정급유설비 교체(단식→복식)·위치이전 공사를 함께 완료한 상황이었다.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는 허가받은 도서 내용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완공검사 합격처분을 할 수 없으며 변경허가 절차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완공검사 시 변경허가 내역에는 없지만 위치

이전 공사를 하여 허가도면과 상이한 변경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완공검사 합격처분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업무를 소홀이 한 관련자 소방경 ○○○에게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일련번호 : 3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등 변경신고 태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과태료) 금2,00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2항에 따라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개별기준) 다목 (4)에 따라서 2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 감사기간 중 ◈◈◈㈜에 허가된 옥외저장소 완공검사 업무의 적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바, 허가받은 품명인 제4류 제3석유류 외에 제4석유류 4,600리터(200리터 드럼 × 23개)를 함께 저장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여 주시고,(시정)

○ 또한, 옥외저장소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허가된 품명만 저장·취급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기술기준 부적합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에 따라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감사기간 중 ㈜◈◈에 허가된 옥내저장소 완공검사 업무의 적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바, 허가받은 출입구인 갑종방화문이 강풍에 의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 옥내저장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위험물제조소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3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제1항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지정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 1회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는 119안전센터별 관할 구역에 위치한 특급 ~ 3급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한 자료조사 기간에 따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18년 5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119안전센터 9개소, ◎◎119안전센터 12개소, ◇◇119안전센터 49개소, ○○○119안전센터 22개소, ◎◎119안전센터 31개소, △△119안전센터 13개소, ○○119안전센터 16개소 총 152개소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미실시 하는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누락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시정)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지연 실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신축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2018년 5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사항을 관할119안전센터에 안내하며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5건의 신축건축물 자료조사를 8일에서 길게는 225일까지 지연하여 실시하는 등 관할구역 내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119재난대응과)

【제 목】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소방공무원, 소속 의용소방대원, 또는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방서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외부위원,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참석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중

퇴직 소방공무원 및 퇴직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현직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소집수당으로 인정하여 처리하는 등 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중 의용소방대원에게도「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일련번호 : 3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119재난대응과)

【제 목】 호흡보호장비 관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면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해야 하고, 호흡보호장비를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이력을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고압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잠수장비(부력조절기, 호흡조절기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는 보유하고 있는 호흡보호장비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보유중인 공기호흡기 용기, 잠수장비(용기, 호흡기 등)에 대해 담당자 미지정 336건, 충전일자 미입력 164건, (재)검사일자 미입력 621건, 잠수장비(부력조절기 등) 정기점검 미실시 등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의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호흡보호장비)의 관리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공기호흡기용기의 관리이력이 누락된 내용은 즉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정기점검 기한이 경과한 잠수장비는 전문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하기 바라며,(시정)

○ 앞으로 현장대원의 생명과 직결된 호흡보호장비를「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119재난대응과)

【제 목】 화재조사보고규정 준수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 3명

【지 적 내 용】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과 조사결과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제1항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는 화재인지로부터 30이내, 최대 50일 이내, 제2항 일반화재의 경우에는 화재인지로부터 15일 이내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8조(화재조사 서류의 서식)에는 화재원인조사 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3-11호)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대상에 대하여 조사 후 그 사항에 대하여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119재난대응과[8717호(2020.06.03.)]에서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는 화재발생 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규정한 화재유형별 서식을 활용하여 화재조사종합보고서 작성 후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에게 기한 내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20년 6월 3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발생한 53건의 화재 중 41건의 화재조사 결과를 미보고(35건) 하거나 기한을 초과하

여 지연보고(4건) 하였고, 그 중 6건의 건축·구조물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3-11)”를 결락하여 작성하는 등 화재조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3-11호)작성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3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구급차 운용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119구급차의 운용) 제1항에 의하면 소방청장 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 구급차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1항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사항으로 「2018년 시 종합감사」에서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서 내근직원 또는 의용소방대(수호천사)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119 구급차를 동원하여 교육할 시에는 상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민간인을 대상 응급처치 및 CPR교육 4회, 유관기관 훈련참석 1회 총 5회에 걸쳐 구급차를 출동이 불가 상태로 유지하는 등 관내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할 사항을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응급처치(CPR)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내근직원 및 의용소방대(수호천사)를 활용바라며, 부득이 119구급차를 동원하여 응급처치교육과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도 상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점검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소방장비관리법」 제1조(목적)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는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및「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소방장비 분류별 세부적인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별표3][5]에 따라 개인보호장비는 매일 실시(교대제 근무자는 교대시마다)하고 그 밖의 소방장비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 다. : 생략
   라. 그 밖의 소방장비
      1)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일(「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 실시
      2)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외의 소방장비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2. 이하 생략

○ 따라서 남부소방서는 개인장비 및 그 밖의 소방장비에 대해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3]에 따라서 개인보호장비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매일(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실시하고 개인보호장비 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별지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20. 5. 7. “소방장비 일일점검방법 개선 알림”의 내용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일일점검을 장비 수량 및 상태 등 현황 변경 시에만 소방장비관리시스템으로 기록하도록 시달하였고, 엔진동력장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서식을 지정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구급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어 119안전센터별 상이하게 실시하는 등 소방장비 정기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부실하게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4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경고 6명

【지 적 내 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및「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 연2회 정밀조사(해빙기, 동절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전 직원에게 알리고, 고장이 발생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연2회(해빙기,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조사 정비계획을 시달한 바 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는 119안전센터별 관할지역 내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소방용수시설이 신설 및 폐쇄된 경우에는 울산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스마트재난대응시스템(GIS)상에 표시 그 결과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월1회 정기점검 미실시 16건, 이미 폐쇄된 저수조를 스마트재난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표시 5개소, 위치정보 오기 5개소 등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부실하게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소방용수점검 누락 9개소, 위치정보 오류 10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소방용수점검 및 시스템 현행화 하여 주시고,(시정)

앞으로는 소방용수 신설·폐쇄·고장 등 정보변경 시에는 즉시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용수시설 정기점검을 미실시한 관련자 6명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일련번호 : 4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구조대)

【제 목】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르면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구조훈련의 종류에는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하천·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부터 제16조에 특별구조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방법, 교육훈련시간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남부소방서는 소속 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전문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개인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연간 교육시간 40시간 중 최대 30시간만 가능한 본부·소방서 자체 수립 특별구조훈련을 전부 기록 하여 인정처리 하였으며,

특별교육훈련과 연관이 없는 청렴 등 사이버교육을 특별교육훈련으로 기록하고, 최대 4시간 인정 가능 한 사이버교육을 8시간으로 기록, 남부소방서 주관이 아닌 구조대 자체계획을 특별교육훈련으로 인정 처리하는 등 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훈련에 관한사항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은 미인정 처리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구급 이송거부·거절확인서 작성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구조·구급활동)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구급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급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거부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고,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146건의 이송 거부·거절 출동 건 중 518건의 이송 거부·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구조·구급요청 거절·거부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구조·구급활동 중 병원이송 거절·거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송거부자”에게 서명을 받는 절차 등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이송으로 인한 구급대 민원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이송 의료기관 선정 관련 구급활동일지 작성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에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모든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한 의료기관이 환자·보호자에 의해 선정될 경우 적절한 치료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환자·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구급출동 1,597건이 환자·보호자에 의해 이송 의료기관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571건에 대한 법적고지 사항 및 서명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등 구급활동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이송 의료기관이 환자·보호자에 의해 선정될 경우 반드시 구급대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환자·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구급대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구급활동일지 활동상황(활력징후) 기록유지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에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모든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구급대원은 환자평가 시 이송환자의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혈당)를 2회(현장 도착시 1회, 병원도착 직전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 이송 소요시간이 5분 이내일 경우 최초 1회만 측정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32,092건의 출동 중 13,214건의 활력징후 2회 측정 여부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아 구급활동일지 활동상황(활력징후) 기록유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소속 구급대원들에게 구급활동일지 작성요령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감염성 질병 등 접촉 보고 및 접촉대원 추적관리 미이행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이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 등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대원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객혈 증세가 있는 결핵의심환자 이송 등 69건의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 건에 대해 그 중 65건의 감염성 질병 등 접촉 보고를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69건의 구급출동대원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 관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구조·구급활동 중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 시 보고에 철저를 기하시고, 감염성 질병 등에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반드시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신규 임용 구급대원 교육 미실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8조(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 및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지도관 또는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는 2018년부터 신규 임용된 신임구급대원 총 12명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신규 임용 구급대원이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구급차 등 정기 소독 및 감염관리실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감염관리대책)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대원 감염 방지를 구조·구급대원이 소독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에서는 2020년 19회에 걸쳐 감염관리실 이용(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는 구급차 등의 소독업무)을 통한 소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감염관리실 사용대장 결재를 162회에 걸쳐 미상신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2차 감염방지를 위해 구급차 등의 소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감염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감염관리실 사용대장 결재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구급의약품 관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별표 13의 제2호에 따르면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3항 및 「구급장비 보유기준(소방청고시 제2020-6호)」에 의하면 구급의약품의 보유기준과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의약품의 배정, 소모, 유효기간 도래로 폐기한 경우 의약품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은 문서로 보고한 후 보건소, 의료기관, 폐기업체 등을 통해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는 아미오다론을 553일 동안 구급차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였으며, 5% 포도당 500ml 수액 등을 무단폐기하고 장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 5건이 일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구급의약품을 적기에 확보하고, 폐기하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펌블런스 대원 교육훈련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 따르면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계획수립·시행) 제2항에 따르면 펌블런스 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 운영에 관한 규정 」 제7조(교육훈련)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등은 펌블런스대원의 구급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총 10시간 이상의 구급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는 2019년 2월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된 이후 펌블런스 대원의 구급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급 교육훈련 10시간 이상 실시 규정을 2019년도에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펌블런스대원 대상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명(부서명)】 남부소방서

【제 목】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기록표 관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지 적 내 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항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유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제1항의 별표4에 따르면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은 1차시 당 0.5시간을 인정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남부소방서는 2019년에 실시된 부산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제9기 구급대원 능력향상 1과정' 56차시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훈련 인정시간을 28시간으로 산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나 56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적정하게 구급대원 교육훈련 기록표를 작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부소방서장은

○ 앞으로는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인정시간과 관련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구급대원 교육훈련 기록표 작성 등 구급대원 교육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Ⅳ 현지조치 요구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 치 내 용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	
	5건	시정 5	402	
1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부적정	시정	402	교육, 휴가 등으로 1개월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4명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금402,370원 회수 조치
2	인지세 전자소인처리 소홀	시정	-	화재진압용 호스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전자적 소인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11건에 대해 즉시 소인 처리
3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시정	-	인사발령시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인계인수를 하면서 인수자 미확인 42건, 입회자 미확인 47건 등 미완료 처리된 114건에 대해 즉시 완료 처리
4	구조·구급장비 물품관리시스템 관리 소홀	시정	-	소방서 구매 또는 소방본부 구입 후 관리전환으로 취득한 구조·구급장비 매몰자탐지기 등 72종 832점에 대해 구조대·안전센터별로 배정된 수량대로 사용전환 조치
5	감염성 질병 접촉보고서 인사기록철 보관 미이행	시정	-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보고서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보관(4건)

Ⅴ 모범사례

승강기 내 호수 방향 알림 스티커 부착

□ 추진배경

○ 다(多)방향 구조 건물 출동시 복잡한 구조로 인한 현장도착 지연

○ 호수방향 알림스티커 부착과 홍보문구 삽입으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홍보 병행

□ 추진내용

○ 대　　상 : 특급소방대상물 13개소 ※특급→1급 점차적 확대 추진

○ 내　　용

- 『1(하나의 가정에) ·1(한 대 이상 소화기를) ·9(구비) 합시다!』 홍보문구 삽입
-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와 연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강화
- 언론보도를 통한 대상처 외 요청 시 스티커 배부 및 부착 예정



□ 기대효과

○ 승강기 탑승 후 호수방향 인지를 통해 신속한 현장출동 가능

○ 화재예방 홍보를 통한 대시민 소방행정 이미지 제고

피난약자시설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

□ 추진배경

○ 피난약자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을 통한 생명보호

○ 안전취약대상(소방관서 원거리, 야간 상주근무자 부족) 초기 대응능력 강화

□ 추진내용

[피난약자시설 기적 만들기 프로젝트] - 2019년

○ 대　상 : 피난약자시설 153개소(경로당 135, 요양병원 18)

○ 내　용 : 대피용 안전박스* 배부(153점) 및 피난안전교육 실시

* 보관박스 : 투명재질(물통, 손수건, 안내문스티커 포함)

[피난약자시설 맞춤형 안전컨설팅] - 2020년

○ 대　상 : 24개소(요양병원 18개소, 노인관련시설 6개소)

○ 내　용

- 피난약자 신속한 대피 동선, 피난계획 수립 지도
- 관계자 자체 소방시설 사용법 및 소방대 유도 교육
- 무각본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임무·역할 지도

□ 추진실적

○ (2019년) 153개소 대피용 안전박스 배부 및 피난교육 실시

○ (2020년) 24개소 피난계획 지도, 소방훈련 등 안전컨설팅

□ 관련 사진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임무지도	노인병원 대피 지도	요양(병)원 무각본 대피훈련

소방공무원 다면평가제 시범 운영

□ 추진배경

○ 상급자 중심의 하향식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조직 내 협업 강화

○ 깜깜이* 성과평가에서 탈피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

*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 평가개요

○ 시　　기 : 매년 5월, 11월 중(정기평정 실시 전)

○ 대　　상 : 소방령 이하(단,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원 등 제외)

○ 평가항목 : 3개영역 7개 문항(70점 만점/문항 당 1~10점)

○ 방　　법 : 온라인평가　　※ 다면평가서(예시) http://naver.me/5UZxkElQ

※ 인터넷포털 상 피평가자 URL 생성→다면평가(공직자 통합메일, 개인 E-mail)→제출

○ 평 가 단 : 계급별 12명[부서 직원(50%/6명) + 업무유관자 등(50%/6명)]

피평가자(계급)	합계(명)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비고
소방령	12명	1	-	11	깜깜이 평가방지를 위해 피평가자별 평가자 명단이 상이함.
소방경	12명	3	2	7	
소방위~소방교	12명	5	2	5	
소방사	12명	9	3	-	

※ 다면평가자 추출 프로그램(엑셀)을 활용하여 평가자(업무유관자) 무작위 추출

□ 추진일정

개인별 업무유관자 파악	평가단 구성	다면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활용
<대상> 소방령 이하 <업무유관자 등> - 현부서 직원 - 업무연관자·업무경험자	- 상·하급자 등 균등 분포(12명) 현부서(50%) + 기타(50%) (공정성) 엑셀활용 무작위 추출 - 개인별 자기성과기술서 제출	- 자기성과기술서 공개 - 사전교육(전달교육) - 온라인 평가(3일간) (인터넷포털 상)	- 개인 통합메일 전송 - 상·하반기 1,2차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4월/10월 말	**5월/11월 첫째 주**	**5월/11월 둘째 주**	**5월/11월 넷째 주**

□ 결과활용 : ①1,2차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②개인 평가결과 피드백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적극 활용 예산 절감

□ 추진배경

○ 태풍으로 인한 소방청사 시설물 피해에 따른 공제금 신청으로 예산 절감

○ (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28조 제3항(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

□ 추진내용

○ 대　　상 : 남부소방서 본관(국기봉 및 창문 유리)

○ 내　　용

-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소방서 본관 국기봉 훼손
- 제10호 태풍「하이선」으로 소방서 본관 창문 유리 파손

○ 예산절감액 : 2,904천원(국기봉 1,925천원, 유리 979천원)

□ 행정절차

피해 내용	⇨	관계기관	⇨	방 문	⇨	관련서류(제출)	⇨	공제금 수령
소방청사 피해상황 파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울산광역지부 재해발생보고서 작성 제출		공제회 담당 손해사정인 방문 현장 확인		공제금 수령권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수리견적서, 수리비지불내역 수리사진,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		2020년 세입예산 편입

□ 관련사진





다중이용업소 DB화 및 QR코드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 및 화재 시 소방정보의 부재 해소

○ 소방정보 DB화 및 QR코드 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 현황 및 흐름도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2,200개소

○ 사업내용 : 다중이용업소 DB화, QR코드 시스템 개발 등

○ 내　　용 : 영업장 평면도, 소방시설, 비상구 위치 등

○ 사업진행 흐름



□ 운영성과

○ 다중이용업소 데이터베이스(DB)화 (2020. 9월 ~ 11월)

- 추진인력 :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 5명

- 대　　상 : 2,200개소(DB 추진 완료)

○ 다중이용업소 QR코드 구축(안)



□ 기대효과

○ 대상물 입구 QR코드를 활용해 소방시설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